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543384 판결 [구상금등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7. 5. 31.

판결 선고2017. 7.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7,357,096원 및 그 중 84,974,733원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182,097,147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82,097,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각 2016. 9.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59,202,9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79,601,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① 2010. 4. 5. 피고 A의 KEB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외환은행,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기한 2012. 4. 4.(이후 2016. 4. 1.로 변경되었다), 보증금액 8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2. 9. 17. 피고 A의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기한 2017. 9. 15., 보증금액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고, 위 피고에게 그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피고 A, 이하 같다)이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신보(원고, 이하 같다)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보가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신보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한도액을 한도로 상환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신보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보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말하며, 율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6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의 이행

1) 피고 A의 원금 연체로 인하여 2016. 4. 2.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2016. 4. 7.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6. 17. 피고 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85,697,185원(= 원금 85,000,000원 + 이자 697,185원)을 변제하였고, 그 중 피고 A으로부터 2016. 6. 20. 149,412원, 2016. 6. 28. 573,040원 합계 722,452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대위변제금은 84,974,733원이 남게 되었다.

3) 그리고 원고는 2016. 6. 28. 피고 A을 대위하여 이 사안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182,097,147원(= 원금 180,000,000원 + 이자 2,097,147원)을 변제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3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회수한 금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6원이다.

제1 보증	149,412	2016.6.17.~2016.6.20.	$149,412 \times 10\% \times 4/365$	163원
573,040	2016.6.17.~2016.6.28.	$573,040 \times 10\% \times 12/365$	1,883원	
계	2,046원			

5) 피고 A이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료를 납입한 다음 날인 2016. 4. 2.부터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의 전날인 2016. 6. 16.까지 보증금액인 85,000,000원의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약금 283,170원($= 85,000,000\text{원} \times 1.6\% \times 76/365$, 10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B와 피고 C, D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B는 2016. 1. 13. 피고 C, D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1. 20. 접수 제2221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리고 2016.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91,2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50,797,087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267,357,096원(= 대위변제금 합계 267,071,880원 + 확정손해금

2,046원 + 위약금 283,170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84,974,733원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182,097,147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위 182,097,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9.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82,097,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피고 B가 피고 C,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1. 13.경에는 아직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2016. 4. 7.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되었으며 그 후 2016. 6. 28.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내지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6. 1. 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 D에게 매각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 D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피고 C, D은,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0년경부터 피고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고, 시가 상당액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원고의 존재 및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등 참조).
-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제1, 2, 3,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10. 4. 23.자 전세보증금은 100,000,000원, 전세기간은 2012. 4. 23.까지로 된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 D은 2010. 5. 7.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A이 운영하던

E에 2010. 6. 10. 20,000,000원, 2012. 2. 24.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C는 2016. 1. 13. 피고 B에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16.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주택대출채무 7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6. 1.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과 피고 B는 부부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A의 딸이며, 피고 D은 피고 C와 부부사이로 피고들은 모두 사실상 가족관계에 있는 점, 피고 C는 2003. 8. 28.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온 점, 피고 D이 2010. 4.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피고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무렵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며, 확정일자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C, D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200,000원, 피담보채무액 50,797,087원)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2016. 1.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종결일인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1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인 210,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797,087원을 공제한 159,202,9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수익자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159,202,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D 사이에 2016. 1.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59,202,913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C, D은 원고에게 위 피고들 지분 상당액인 각 79,601,456원(= 위 159,202,913원 $\times$ 1/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선희

판사권형관

판사여인지

별지